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24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5구단5012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새턴바스
피 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변 론 종 결	2015. 4. 28.
판 결 선 고	2015. 6.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취득세 101,781,250원, 지방교육세 18,555,2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설립 및 목적사업 추가

원고는 1990. 8. 6. 설립되어 본점 소재지에서 위생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24

위하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천 남구 A 대 444㎡ 및 그 지상 건물(지하 1층, 지상 7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직전인 2013. 5. 28. 숙박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사업자등록

1) 원고는 2013. 5. 21.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2억 원에 매수하여, 같은 달 31.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3. 5. 31.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C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2013. 11. 8. 폐업신고를 하였다.

사업장 소재지	이 사건 부동산
업태	숙박업
종목	여관업

3) 원고는 2014. 4. 25. 다시 앞서 본 표의 기재 중 종목만 호텔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D'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취득세 등 부과·고지

1) 원고는 2013. 5. 31. 피고에게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정한 취득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0,048,000원과 이를 기초로 산출한 지방교육세 9,004,800원을 신고하고 위 각 금원을 납부하였다.

2) 피고는 2013. 12. 5. 원고에게, 원고가 대도시인 인천광역시에서 숙박업을 영위하고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지점을 설치하였다고 보아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앞서 본 일반세율을 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24

용하여 자진 신고한 세액을 차감하여 취득세 101,781,250원(가산세 11,733,250원 포함), 지방교육세 18,555,290원(가산세 545,690원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내지 7, 9, 을 1 내지 3, 6(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년경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원고가 생산한 욕실 자재를 모텔에 설치하여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하고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매도인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방식을 택하였고, 원고가 제3자에게 모텔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월 매출 확인이 필요하여 부득이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리모델링 공사가 마쳐질 때까지 숙박업을 한시적으로 영위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점설치의 등기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숙박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었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지점설치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제8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 전단,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4.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24

1. 1. 안전행정부령 제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 의하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지점 또는 분사무소는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4023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점설치의 등기를 하지 않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숙박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신고를 마치고 나서 다시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숙박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사무 또는 사업을 처리하기 위한 지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우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24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24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 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4. 1. 1. 안전행정부령 제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 끝 -